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40

발의연월일: 2024. 8. 12.

발 의 자: 한정애·복기왕·강선우

박희승 • 박홍배 • 서삼석

김준형 · 정성호 · 박지원

박홍근 • 이수진 • 장철민

서영교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, 최대출력, 전비,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또는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

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, 주차장 내부 온도가 1,000도 이상 넘게 치솟으며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음.

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가 당초 중국 배터리 1 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국토부 조사를 통해 10위권 업체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,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

이유로 베터리의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.

이에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 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(안 제30조제4항 단서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전기자동차제작자의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이 포함된 내용의 자동차의 제원(諸元)을 통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0조(자동차의 자기인증 등) ①	제30조(자동차의 자기인증 등) ①		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	4		
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			
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			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			
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			
(諸元)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			
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(자			
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)를			
하여야 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		
	자동차제작자의 경우 성능시험		
	대행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		
	<u>상품명이 포함된 내용의 자동</u>		
	차의 제원(諸元)을 통보하여야		
	<u>한다.</u>		
⑤ ~ ⑥ (생 략)	⑤ ~ ⑥ (현행과 같음)		